

안산시여성상조례안

의안 번호	538
----------	-----

제출년월일 : '96. 10.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승고한 부덕과 어진심성으로 경로효친을 솔선실천하고 사랑과 자애로 전진한 가정을 이루어온 여성과
- 투철한 박애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예술과 기능으로 명랑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여성을 발굴 표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여성상의 시상부문은 훌륭한 어머니·효행·박애·봉사·예능의 5개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안제2조)
- 여성상의 시상 시기는 매년 5월중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안제3조)
- 여성상 수상후보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안산시내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각 부문에 해당 하는자 이어야 한다.(안제4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기관장, 동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안제5조)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근거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여성상 조례 참고
- 입법예고 : '96. 8. 26 ~ 9. 14(20일간)
- 의견 : 의견없음

안산시여성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고한 부덕과 어진 심성으로 경로효친을 솔선 실천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예술과 기능으로 명랑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여성을 선발하여 안산시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여성상의 시상부문은 훌륭한어머니·효행·박애·봉사·예능의 5개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여성상의 시상 시기는 매년 5월중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여성상 수상후보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안산시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훌륭한 어머니 부문

부덕과 어진 인품을 갖춘 어머니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여성

2. 효행부문

바른 예절과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 옴으로써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한 여성

3. 박애부문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정기간동안 사회사업을 전개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 여성

4. 봉사부문

여성단체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여성의 능력배양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여성

5. 예능부문

바른 예의법칙과 부덕으로 전진한 가정을 이루고, 각고의 노력으로 예술, 기능 등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 지내고 있는 예능을 가르치고 발표함으로써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한 여성

② 이 조례와 안산시 문화상 조례에 의하여 상을 받은 사람은 여성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단체장,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기관단체장, 동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수상대상자 선정) 수상대상자는 안산시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하되, 시장이 작성·제출한 심사자료에 의거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4급이상 공무원과 학계·예술단체·사회봉사단체등에서 사회적 저명인사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보건사회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해임 또는 해촉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집)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진행 및 심사총괄
2. 심사·선정된 수상대상자의 결정 선언
3. 심사평 발표

제10조(수상대상자의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각 부문마다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수상대상자에게 시상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이 된다.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